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영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256

발의연월일: 2024. 11. 5.

발 의 자:김영배·박홍배·이기헌

권향엽・조 국・이개호

강유정 • 박선원 • 홍기원

김태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온라인상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(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)의 광범위한 공 유·유통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.

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러한 불법 촬영물 등과 관련하여 긴급한 상황에서는 서면으로 의결을 진행하고 있음. 그런데 범죄의 실효성 있 는 해결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이에 더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 심의·의결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여 신속하게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과정에서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뢰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5조의2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4항 전단 중 "전자문서를 포함한다)"를 "전자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"로 한다.

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5조의2(수사의뢰) 심의위원회는 심의·의결(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과정에서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(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)을 인식하는 등 범죄 혐의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관할 수사 기관의 장에게 수사를 의뢰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수사의뢰에 관한 적용례)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·의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22조(회의 등) ① ~ ③ (현행 제22조(회의 등) ① ~ ③ (생 략) 과 같음)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「성폭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」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 는 복제물(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) 등으로 인하여 침해 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 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 을 때에는 심의위원회 규칙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(전 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의결 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--할 수 있다.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⑤ ~ ⑦ (생 략) (5) ~ (7) (현행과 같음) 제25조의2(수사의뢰) 심의위원회 <신 설> 는 심의 · 의결(서면으로 의결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과정에 서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<u>관한 특례법」 제14조 및 제14</u> 조의2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 제물(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

한다)을 인식하는 등 범죄 혐 의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를 의 뢰하여야 한다.